

건축기준법 성능 규정화와 손해보험

1. 머리말

「건축기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98년 6월 12일 공포되었다. 이번 개정은 건축심의회 의 답신(21세기를 전망하고, 경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건축행정의 위상에 관한 답신)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골격부터 대대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의 최대 특징은 지금까지의 「사양규정」 중심 기준 대신에 「성능규정」이 도입된 것인데, 이 성능규정을 도입한 개정 건축기준법이 2000년 6월 1일 시행되었다.

본 고에서는 성능규정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과제와 대책을 바탕으로 손해보험업계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2. 성능규정 도입에 따른 과제와 대책

성능규정 도입으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지고, 새로운 재료와 기술에 대한 대응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기술의 개발경쟁은 당연한 것으로서 각 관계자가 맡아야 할 책임이 명확하게 요구되고, 이 책임을 게을리 하면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게도 되었다.

또한, 이번 성능규정 도입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주택 품질 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어 신축주택 취득계약(청부 매매)에 있어 기본구조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은 10년간이 의무화되었다.

성능규정 도입 등에 따른 실제 과제가 노출되는 것은 상당히 나중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장래를 예측한 과제를 지금 상세하게 하나하나 표시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현 시점에서 가정할 수 있는 과제는 개괄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성능규정 도입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기술적 과제」, 「법적 책임에 관한 과제」, 「건축물에 대한 보증 과제」 등 세 가지에 대해 과제와 대책을 예시로 표1에 나타내었다. 이들은 일례에 지나지 않지만, 이와 같이 각 기업에서 자사 사업에 비추어 발생할 과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3. 손해보험업계의 역할

이번 건축기준법 개정은 규제완화의 큰 흐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규제완화에 따라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에 따른 사회환경의정비가 중요하다.

3.1 보상기능 및 방재기능의 제공

건축심의회 답신에서는 「보험제도를 활용하

표1. 과제의 내용과 그 대책 (예시)

내용·대책 개개의 과제	과제의 내용	대 책
기술적인 과제	고도의 검증법에 의한 재료나 설계, 공법 등의 개발 및 설계도에 따른 시공이라는 기술력이 건축부채 제조 업체나 시공업자 등에게 지금까지 이상으로 요구되어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부문의 강화 · 타사와의 제휴에 의한 공동개발 · 손해보험회사와의 연대 등
법적 책임에 관한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수준의 성능을 만족하고 있는지 등 검사방법도 포함하여 명확히 해둔다. · 건축주에 대해 성능내용과 보증기간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화로 보존 · 업계 분쟁대응기관 설립 등
건축물에 대한 보증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의무화된 보증기간 중에 어느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는 보수에 대비하여 비용부담을 계획해 두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년 일정액의 적립 · 보증기관의 설립 혹은 가입 · 손해보험의 이용 등

(주) 법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재산과 조업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 손해보험회사의 권장기준이 있다. 여기에는 보험료 경감이라는 인센티브도 있다.

여 사고나 분쟁에 대응한 책임체제를 갖춘다.」 고 손해보험의 활용을 제언하고 있다. 이 제언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상기능의 제공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이러한 보상기능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손해를 경감하기 위한 방재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이 기능도 손해보험업계의 큰 역할이다.

이번 「건축기준법에 대한 성능규정 도입」으로 각 건설관계 기술자와 기업에 기술력 향상이 요구되고 다양한 니즈가 발생하므로 손해보험업계도 건축에 관한 여러 가지 방재기능의 향상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해 나가야 한다.

3.2 안전방재기준의 작성

법률에서는 인명안전이 강조되지만,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국민이 지켜야 할 최저기준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보다도 높은 수준의 독자적인 안전기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민간기업으로서는 법률보다도 높은 수준의 안전기준을 작성하기 위한 노력과 비용의 부담 또는 검토에 사용하는 사례 수집에 자연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고정보의 수집·분석과 안전방재에 관한 노하우를 가진 손해보험업계의 지원이 필요

하다. 특히, 법률의 관여가 별로 없는 「재물의 보전」과 「조업의 계속」을 목적으로 하는 방재기준의 작성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 건축기준법에 성능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외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므로 참고로 영국, 미국 및 독일의 건축관련 상황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다.

3.3 해외 손해보험업계의 건축방재기준

(1) 영국

1984년 건조물법(Building Act)은 그 이전의 규제와는 달리 성능규제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건조물법 아래에 건조물규칙(Building Regulation)이 설치되어 건조물에 요구되는 안전성에 대한 추상적인 취지만 기재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또다시 건조물규칙 밑에 제정되어 있는 승인문서(Approved Document)에 기재되어 있다. 또한, 상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승인문서가 다시 영국규격(British Standard: BS)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1991년 건조물규칙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승인문서 B에서 「화재로부터의 재산보전에는 높은 수준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이 부분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다 고도의 기준을 제공한다.」며, 재산보전은 보험회사의 역할이라 기재되어 있다.

손해보험업계가 설립한 LPC(Loss Prevention Council¹⁾)가 규격 작성에 관여하고, LPC가 재산과 조업보전을 목적으로 작성하고 있는 건축방재(특히 방화벽과 방화구획)와 소화설비 등의 설계기준이 영국규격이 되기도 한다.

(2) 미국

미국에서는 국가의 입법분야는 연방헌법 제1조

1) 영국의 보험업계가 중심이 되어 방화향상을 위해 설립한 단체

8절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뿐으로 건축기준 등은 각 주에 입법권이 있다.

각 주에서는 건축법(Building Act)이나 기타 명칭으로 입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나, 규제방법이 반드시 같진 않다. 그 때문에 주내 혹은 근린 주와 건축기준(Building Code)이 맞지 않는 불편을 피하기 위해 민간기관이 표준모델이 되는 빌딩 코드를 작성하여 각 주가 주법과 주규칙에서 그 기준의 채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빌딩 코드는 주법에서 준거해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간단체가 작성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효력(구속력)을 가진다.

방화안전규격을 다수 제정하고 있는 NFPA 기준은 민간기관이 작성한 빌딩 코드와 연방직업안전위생규칙에서 준거해야 하는 기준 규격으로 채용, 지정되고 있다.

(3) 독일

16주로 이루어진 연방공화국으로, 법률은 연방과 주 양쪽에 입법권이 있다.

건축규제에 대해서는 연방건축법 아래에 연방이 작성한 모범건축령법(Musterbauordnung)을 모형으로 각 주가 실상에 맞추어 다소 수정한 주건설령(Landesbauordnung)을 제정하고 있다.

방화관련 규정은 건축령에서 정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표준이고,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감사국과 교섭 과정에서 법령이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는 조치가 요구되거나 완화되는 일도 있다.

안전방재에 관한 규정의 작성단체로는 일본의 JIS에 해당하는 독일규격협회(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e.V.: DIN) 외에 손해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Vds(미국의 NFPA나 영국의 LPC에 해당)가 있는데, Vds는 자동소화설비나 건축방재(특히 방화벽과 방화구획) 기준을 제정하고 있다.

자동소화설비에 관한 제규격은 직접 법으로 인 용되지는 않으나, 이에 준거하지 않는 소화설비는 보험료 할인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실제로 도입 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등의 자동소화설비는 대부분이 Vds기준을 따르고 있다. 또한, Vds의 스프링 클러기준은 DIN(독일규격)과도 동일하다.

4. 맺는 말

규제완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건축기준 법이 크게 개정되어 성능규정 도입에 의해 다양한 설계, 새로운 재료와 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축기준법에 대한 성능규정 도입」으로 건 설관계 기업이나 관계자는 「자기책임」의 원칙 을 지키는 것이 요구되므로 손해보험업계에도 보 상기능 및 방재기능 제공에 대한 니즈가 지금까지 이상으로 발생하게 되고, 또한 성능규정이 원활히 기능하기 위해 외국처럼 안전방재기준 작성시 손 해보험업계의 참여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손해보험업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기업 의 원활한 경제활동 영위와 사회환경 정비를 위해 서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가야 한다. ☼

— 火災(2001.2)

— 발췌: 위험관리센터 대리 유성기

위험관리정보회원 신규 가입자 명단

(가입기간 : 2000.10 - 2001.04)

회원번호	가입일자	회 원 명	회원번호	가입일자	회 원 명
G0911	'00.10.09	이현복 님	G0922	'01.02.26	(주)연합안전
G0913	'00.10.24	(주)무등	J0028	'01.03.07	박희순 님
J0024	'00.10.25	이홍구 님	G0926	'01.03.14	이재언 님
G0914	'00.10.31	명창욱 님	G0923	'01.03.15	조철래 님
G0915	'00.11.01	이 철 님	G0924	'01.03.16	김진수 님
P0503	'00.11.07	한국전력공사	G0925	'01.03.19	한국미부
G0916	'00.11.16	황철석 님	G0927	'01.03.21	청정빌딩
P0504	'00.11.30	LG이노텍	G0928	'01.03.22	광명인크
J0025	'00.12.01	한진중공업	J0029	'01.03.23	박기복 님
P0509	'00.12.30	중앙소방학교	G0929	'01.03.27	김근영 님
G0917	'01.01.13	이선경 님	G0930	'01.03.27	김영석 님
P0510	'01.01.27	신도림대림APT	G0931	'01.04.03	세일소방설계
P0511	'01.01.29	휴비스(주)	G0512	'01.04.06	파라다이스호텔
J0026	'01.01.31	인천국제공항	G0932	'01.04.06	박정남 님
G0918	'01.01.31	두산테크팩	G0933	'01.04.06	서성호 님
G0919	'01.02.02	애드세이프(주)	P0512	'01.04.07	조필래 님
J0027	'01.02.06	한국건설관리공사	J0030	'01.04.09	홍문수 님
G0920	'01.02.09	손봉세 님	G0934	'01.04.13	한양대학교
G0921	'01.02.12	이채현 님	G0935	'01.04.16	효성통상
S0045	'01.02.26	의제전기기술사고시원	G0936	'01.04.23	김엽래 님

☼ 위험관리정보회원 가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